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16일

다산동장
다산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임 *옥	소 *문 1974-04-1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(신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8-16